

02. 운전면허별점제도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별점기준)

▣ 별점제도란?

운전면허별점제도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나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위반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과하여 그 점수의 합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운전면허에 대한 별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 부과한다.

▣ 별점적용예시

◎ 1년동안 별점의 합계가 121점이면 면허취소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는 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에 따라 별점을 계산하여 위 사람의 인적사항과 면허번호, 별점들을 입력하고,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과거 3년간의 별점이 합산되어 관리되며, 만일 1년 동안 별점이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합계가 201점 이상 또는 3년간의 합계가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별점의 합계가 40점 이상이라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된다.

[예]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이하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별점은 100점이므로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이 경우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성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지기간을 감경한다. 면허취소가 정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 별점의 합계가 40점 미만인 경우 1년 후면 별점이 소멸한다.

운전자에게 별점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어서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때 별점이 없는 것으로 끊어 달라고 부탁하는 운전자를 가끔 볼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도 별점을 의식하여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별점의 합계가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사고일(또한 위반일)로부터 사고없이 1년이 경과하면 별점이 소멸한다. 따라서 너무 신경쓰지 말고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 다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한편 뺑소니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30점의 특례점수가 부여되므로 별점관리에 참고할 만하다.

▣ [별표 28] 면허정지처분의 개별기준 [가. 법규나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별점 (1점1일)	기타처분
------	-----------------	--------------	------

1. 면허증 갱신기간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때	제93조	110	-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이상 0.1퍼센트미만)	제44조제1항	100	형사입건
3.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93조	90	형사입건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범칙금 부과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제48조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지운전	제49조제1항 9호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165조	30	범칙금 부과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9. 속도위반(40km/h초과)	제17조제3항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제60조제1항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13.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위반	제92조제2항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범칙금 부과
1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제17조제3항		
16.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제22조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10호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4항		
19.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3조제1항·제2항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 제2항	10	범칙금 부과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 제4항		
22.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 제2항, 제60조제2항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제27조		
26. 승객 또는 승차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제39조제2항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39조제2항		
28.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5호		
29.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주)

1. 제1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기간 중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 받은 범칙 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별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별표 28] 면허정지처분의 개별기준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별점기준

구분		별점	내용
인적 피해	사망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 사고	부상신고1명 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 고)

-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2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별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 3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 4 교통사고로 인한 별점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별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불이행에 따른 별점기준

불이행	적용	별점	내용
-----	----	----	----

사항	법조		
교통사고 야기 시 조치 불이행	제54조 제1항	15	1.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30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